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 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 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
- 미중 무역분쟁, 일본 수출규제,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에 따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
-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

4. 주요내용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설(안 제21조)
- 타· 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,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강화(안 제22조~제23조)
- 서비스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(안 제24조)
- 지원비율 특례 확대(안 제28조)
- 성장촉진지역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(안 제30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는 2004. 11. 26. 국내기업 및 외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돼 운영되어 오다, 2006. 12. 22.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전부 개정 하였음

※ 당초 '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'에서 '06.12.22. 현행처럼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'로 제명 변경

- 이후 지원 업종확대, 투자진흥기금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몇 차례 일부개정이 있었으나, 정부정책상 법령 및 지원기준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분리하여 국가 지원이 됨에 따라 우리도 투자유치 관련 조례도 분리 제정할 필요성 대두
- 이에 「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,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괄
  - 제6장 제40조로 구성된 현행 조례를 제5장 제38조 개정함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<b>제1장 총칙</b></p> <p>제1조(목적)<br/>제2조(정의)</p> | <p><b>제1장 총칙</b></p> <p>제1조(목적)<br/><u>제2조(정의)</u><br/>↳ 기존 제2조(정의) 내용 중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 도 실정에 맞도록 항목 및 내용 수정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<b>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</b></p> <p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</p> <p>제4조(위원회 구성 등) → 개정 제5조<br/>제4조의2(위원회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→ 개정 제6조<br/>제5조(기능) → 개정 제4조</p> <p>제6조(회의) → 개정 제7조<br/>제7조(의견 청취 등) → 개정 제8조<br/>제8조(수당 등) → 개정 제9조<br/>제9조(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) ▶ 삭제<br/>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 등) → 개정 제10조, 11조</p> <p>제11조(경비의 지원) → 개정 제11조</p> <p>제12조(투자유치 지원) → 개정 제13조</p> | <p><b>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</b></p> <p><u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</u><br/>↳ 기존 강행 규정에서 선택적 규정으로 수정</p> <p>제4조(기능)</p> <p><u>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</u><br/>↳ 부위원장을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으로 지정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제7조(회의)</p> <p>제8조(의견 청취 등)</p> <p>제9조(수당 등)</p> <p><u>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)</u><br/>↳ 기존 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 등) 내용 중 전문가 활용 부분 분리</p> <p><u>제11조(자문단 운영)</u><br/>↳ 기존 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 등) 내용 중 자문단 운영에 해당하는 내용과 11조(경비의 지원) 통합</p> <p>제12조(민간기관의 파견근무)</p> <p>제13조(투자유치 지원)</p> |
| <p><b>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운용</b></p> <p>제13조(투자진흥기금) → 개정 제14조</p> <p>제14조(기금의 용도) → 개정 제15조</p> <p>제1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→ 개정 제16조<br/>제16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br/>제17조(기금관리 공무원)</p>  | <p><b>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운용</b></p> <p><u>제14조(투자진흥기금)</u><br/>↳ 기존 제13조(투자진흥기금) 내용 중 기금조성 재원으로 '벤처임대단지 운영 수입금 및 매각대금' 추가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</p> <p><u>제15조(기금의 용도)</u><br/>↳ 기금 활용용도 추가 신설<br/>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<br/>컨설팅 수수료,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<br/>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</p> <p>제1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</p> <p>제17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p> <p>제18조(기금관리 공무원)</p>  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<b>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</b></p> <p>제18조(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) ▶ <b>삭제</b><br/>↳ 「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별도 제정</p> <p>제19조(지방세 감면) ▶ <b>삭제</b><br/>↳ 「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별도 제정</p> <p>제20조(입지지원) ▶ <b>삭제</b><br/>↳ 「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별도 제정</p> <p>제21조(교육훈련보조금 지원) → 개정 제26조</p> <p>제22조(고용보조금 지원) → 개정 제27조</p> <p>제23조(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 지원) ▶ <b>삭제</b><br/>↳ 「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별도 제정</p> <p>제24조(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) ▶ <b>삭제</b><br/>↳ 「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별도 제정</p> | <p><b>제4장 투자기업지원</b></p> <p>제18조</p> <p>제19조(투자촉진지구 지정)</p> <p>제20조(국가의 재정자금 지원) ▶ <b>신설</b></p> <p><u>제21조(국내복귀기업 지원)</u> ▶ <b>신설</b><br/>↳ 국내 복귀기업 지원 근거 마련</p> <p><u>제22조(타 시·도 기업 이전)</u><br/>↳ 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상한 증액 (지원한도: 100억, 임차료: 9억)</p> <p><u>제23조(도내 신·증설 투자)</u><br/>↳ 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상한 증액 (지원한도: 100억, 임차료: 9억)</p> <p><u>제24조(서비스업 지원)</u><br/>↳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상한 증액 (지원한도: 50억, 임차료: 9억)</p> |
| <p><b>제5장 국내외기업 투자지원</b></p> <p>제25조(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) ▶ <b>삭제</b><br/>↳ 「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별도 제정</p> <p>제26조(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)</p> <p>제27조(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) ▶ <b>삭제</b><br/>↳ 개정 제20조</p>  | <p>제25조(공장운영비 등 지원)</p> <p><u>제26조(교육훈련보조금 지원)</u><br/>↳ 기존 제21조 내용 중 지원기간 확대(6월→1년)</p> <p><u>제27조(고용보조금 지원)</u><br/>↳ 기존 제22조 내용 중 지원기간 확대(6월→1년) 및 기존 제31조 내용 포함</p>  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제28조(타 사도 기업 이전비 지원) → 개정 제22조   | 제28조(지원비율 특례) ▶ 신설<br>↳ 기준에 따라 보조금 가산 근거 분리 및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내용 추가             |
| 제29조(도내공장 신·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)<br>↳ 개정 제23조   | 제29조(지원한도)<br>↳ 제조업(50억→100억)과 서비스업(20억→50억) 지원 한도액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9조의2(서비스업에 대한 지원) → 개정 제24조  |  |
| 제30조(국내·외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)<br>↳ 개정 제19조  | 제30조(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)  |
| 제30조의2(공장 운영비 등 지원) → 개정 제25조<br>제31조(국내기업의 지원 준용) ▶ 삭제<br>제31조의2(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) ▶ 삭제<br>제31조의3(임차료 지원) ▶ 삭제<br>제32조(지원한도 및 절차) → 개정 제29조 제31조<br>제33조(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 → 개정 제30조 | 제31조(절차)<br>제32조(중복지원의 금지) ▶ 신설  |
| <b>제6장 보칙</b>  | <b>제5장 보칙</b>  |
| 제34조(사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)<br>제35조(민간기관의 파견근무)<br>제36조(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) ▶ 삭제<br>제37조(지원 등의 취소 등)   | 제33조(도 시·군보조금의 분담 등)<br>제34조(사후관리)<br>제35조(지원 등의 취소)<br>↳ 기존 강행 규정에서 선택규정으로 변경 |
| 제38조(비밀 유지의 의무)<br>제39조(투자유치 성공 보상)<br>제40조(시행규칙)  | 제36조(비밀 유지의 의무)<br>제38조(투자유치 포상)<br>제38조(시행규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부칙</b>  | <b>부칙</b>  |

-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
- 안 제14조제2항은 벤처임대단지 운영 수익금 및 매각대금을 투자진흥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되, 적립된 기금은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용도로 한정하도록 함
- 안 제14조제4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  -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
  - 사전 심의 절차 미 이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하여 현행 조례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.12.31.까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#### [ 기금의 존속기한 ]

##### <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>

#####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안 제15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기금의 용도 외에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및 컨설팅 수수료,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
- 안 제21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안 제22조, 제23조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거나, 도내에 신·증설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

- 안 제24조는 국내기업이 도내에서 서비스업을 하려는 경우 부지대임비, 건축비,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%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
- 안 제28조는 **신규고용인원에 따라** 추가 지원비율의 범위에서 가산하고, **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인** 경우 2% 범위에서 가산, **충북 6대 신성장동력 산업\***에 해당하는 경우 3% 범위에서 가산토록 지원 **비율 특례를 확대**
  - \* 바이오, 화장품.뷰티, 태양광.신에너지, ICT융합, 유기농.식품, 신교통.항공
- 안 제30조는 상시고용인원 200명이상, 투자금액이 1,000억원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
- 안 제35조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둠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,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려는 리쇼어링(Reshoring)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,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량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등의 유치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임
-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지원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기업 투자 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'조례안 주요 검토내용'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 심의 절차 미이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하여 현행 조례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.12.31.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
**< 안 제14조제4항 대한 수정의견 >**

| 조 례 안   | 수 정 의 견  |
|---|--|
| 제14조(투자진흥기금)<br>①~③ (생략)<br>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| 제14조(투자진흥기금)<br>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br>④ -----2021년 12월 31일---<br>-----<br>----- |

- 기업의 투자 유치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나, 각종 인센티브는 법령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도 중요한 만큼 지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